

## [사 건 명] 행심 2014-5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재결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란에 “다소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며 자신이 받은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으로 기록한 사실로 2014. 3. 1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14.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신청에 따라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인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4. 3.17. 청구인에게 정정 거부 사실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만 한다.)

다. 청구인은 2013. 3.24. 위 결정사항에 관한 민원처리 답변서를 송달 받았으며, 동 민원처리 답변에 이의가 있어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4. 4. 8.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보충서면 주장 포함)

- 가. 청구인 母가 2014. 2.14. 학교생활기록부 행동 및 종합의견을 기재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 하자, 담임교사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일 년 동안 담임교사의 느낌으로 기술했다고 하였으나, 민원처리 답변서에는 학생들의 상담 내용 및 행동 사항 등을 교무수첩에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없는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위법 하다.
- 나. 청구인은 2013.10월 학교폭력 피해자로 피청구인의 피해자 보호 조치(심리상담 및 조언)를 거부하고,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보호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한 달여가 지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로 출석인정을 요구(의사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리한 피청구인은 위법한 처리를 한 것임) 한 일로 피청구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보복성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소속 교사들로만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의 일방적인 회의는 부당하다.
- 라. 교무수첩은 청구인과의 면담 후에 조작한 것이며, 교무수첩 어디에도 청구인에 대해 “다소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며 자신이 받은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라고 쓴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2014. 3.11. 청구인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신청에 따라 학교생활기

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제2항에 의거 2014. 3.14.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안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2014. 3.1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삭제 요청 한 문구에 대해서는 학생의 행동에 대하여 담임교사로서 판단하고 기록 한 부분이며, 담임교사가 학생의 장점 및 단점 등의 행동특성을 학교생활기록부 해당 항목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앞으로 행동 변화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기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일정 기간(5년) 후에 자동 삭제, 폐기되는 항목이므로 보복의 의도로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인 출석인정 처리과정은 청구인 측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 기간 출석을 인정한 부분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처리한 사안이며, 출석인정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정적으로 작성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의 행동에 의한 관찰결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IV.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 제16조, 제19조

## 2. 판 단

-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법령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고, 동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교육부 훈령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침(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정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내부기준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지침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서 위 지침에 의하여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

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4두33 판결)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무수첩에 의하면 이 사건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의 기록 사항은 담임교사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V.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